

“근로자는 근로조건외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1항)”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305-80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210-71 (2층) 전화 042) 862-7760 전송 862-7761(본부)
☎ 13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53-4 청암빌딩 202호 02) 2058-2775 전송 02)2058-2776(서울본부)
교육국장 이경진 (lkj5060@hanmail.net)

문서번호 : 공공연구노조2007-1-8호

시행일자 : 2007. 7. 26

수 신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이상완 조합원

선 결		지 시	
접	일자 시간	결 재 공 략	
수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표준연구원지부 지부장 임기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이상완 조합원님께서 2007. 7. 12 질의 관련입니다.

2. 위 내용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서도 논쟁이 진행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노동조합의 입장을 표준지부에 공문(공공연구노조 2007-1-7호, 2007. 7. 23)을 통해 전달 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완 조합원님께 대한 답변은 표준지부에 전달한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표준지부에 발송한 공문 사본 1부. 끝.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이 FAX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원본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외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1항)”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305-80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210-71 (2층) 전화 042) 862-7760 전송 862-7761(본부)
☎ 13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53-4 청암빌딩 202호 02) 2058-2775 전송 02)2058-2776(서울본부)
교육국장 이정진 (lkj5060@hanmail.net)

문서번호 : 공공연구노조2007-1-7호

시행일자 : 2007. 7. 23

수 신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재
수	시간		
	번호	공	람
처	리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표준연구원지부 지부장 임기논란과 관련한 공공연구노조의 입장

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표준연구원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기에 대한 논쟁>등과 관련입니다.
3. 2004년 5월 25일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기노조 2004-6차 중앙위원회의 회의록 (우리노조 홈페이지 자료실/회의자료 30번)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심의안전 2] 지부운영규정 승인에 관한 건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2002년 10월 표준지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집행부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존중하여 이번 건에 대하여 인정하나 향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

=> 원안대로 통과됨. 단 지부임원임기 개정은 개정시점의 집행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4. 위 회의록에는 두 가지 결정사항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지부 당시의 집행부(이상완 지부장)의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하는 규정을 승인한 것이며, 두 번째는 향후 다른 어떠한 지부에서도 지부 집행부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지부에서 결의되고 중앙위에 상정되더라도 현재의 집행부에는 적용하지 않고 차기 집행부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인 결정사항입니다.

5. 따라서 현재 표준지부 집행부의 임기는 2007년 8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6. 또한 글은 2004년 당시 회의의 의장이었던 박장영 수석부위원장 동지와, 회의록 작성자인 김영목 사무처장 동지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 주 노 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이 FAX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원본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중앙위원회 회의록

■일시: 2004년 12월 21일 14시

■장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참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최영섭부위원장, 박명국부위원장, 오승원 부위원장, 사무처장, 화학, 표준, 생명, 에너지, 해양, 과기정책, 원자력, 전품, 항우연, 과기정보, 과학재단, 한의학, 환경, 관리본부, 진흥원, 시설안전기술공단, 기초, 전기연, KINS, 산기평

1. 성원보고

2. 개최선언

3. 노동의례

4. 보고안건

[보고안건 1] 전차회의록

[보고안건 2] 복직투쟁 상황보고

[보고안건 3] 임단협 현황보고

-지부별 진행 현황 체크

[보고안건 4] 특별회계보고

[기타] '12월 공공연맹 투쟁사업장 집중투쟁 조직'건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관심 부탁

5. 심의안건

[심의안건3] 지부임원 인준에 관한 건

-안건설명: 사무처장

-환경 송은상 지부장의 제5대 임원 선거 결과 보고와 포부

⇒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심의안건4] 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에 관한 건

-안건설명: 사무처장

-이성우위원장 공공연맹 사무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전임 파견키로 함

⇒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심의안건2] 투쟁지부 지원에 관한 건

-안전설명: 사무처장

(1)

-과기연지부 단협쟁취투쟁 현안

⇒심낙준 부지부장: 명칭통합항목을 제외한 부분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오승원부위원장: 원장실 점거농성과 본부 상근자 파견에 대한 판단 필요

-24일까지 수도권지부장중심으로 연좌농성 결함기로 함

-위원장: 파업 돌입시 본부 상근자 파견을 포함한 강도 높은 지원을 하겠다

(2)

-표준과학연구원지부 현안

-이상완지부장⇒ 사건의 경과와 상황 설명

-최영섭부위원장⇒ 표준현안 대책 관련 회의 결과 설명

-위원장: 홍보실 침입에 대한 의미와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이상완지부장과 표준지부에서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최근의 사무국장 선출건에 대해서도 총회를 통해서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전임자 교체건은 위원장의 권한임에도 지부에서 전임자교체를 임의적으로 요청한 것 등 표준지부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위원장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이상완 지부장의 입장이나 의견을 내 달라

-송은상: 이상완지부장은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임원들이 원장과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

-사무처장: 본부도 지부장의 인신구속사태는 막겠다 /지부도 일련의 사건의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고 현재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상완지부장: 장부확인을 하러 홍보실로 간 것뿐이며 부정사태에 대해 위원장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밝혀 달라.

구속각오하고 있으며 원장과 협조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본부도 일정부분 이 책임이 있다.

나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

-김용윤지부장: 내가 알고 있기에 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지부장 자의의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표준을 도와야 한다.

-송은상지부장: 이 사태를 비굴하게 잡더라도 구속을 막고 나름대로 해결방지를 하고 본부가 중재를 해야 한다 한두번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만큼 고상한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

위원장: 상집간부와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다른 것에 대해 표준지부기총회를 통해 투쟁의지를 확인한적이 있는가 / 지부내부에서 정파되지 않은 사항들이 총회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지부내부 조합원들의 임기까지 임원시 되어야 한다/ 싸움의 정당성에 대해 상집간부와 대의원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표준지부의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기원지부장: 내부고발자 보호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데 우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일단 이상완지부장이 구속되지 않는 방법으로 단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 이후 내부고발자 문제를 부각시키자.

위원장: 지난 일년 이상 투쟁본부를 꾸려왔을 때 이기원 지부장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싸움을 끌어왔다 / 지난 3주동안 구속을 막기위해 본부가 움직여 왔다.

최영섭부위원장: 위원회중 측근의 과기노조차원에서의 탄원서를 내자.

10분 정회

▶ 투쟁자금 1천만원 신청 전

최영섭: 22-23일 중대위원장을 만난다.

탄원서는 24일 검찰 출두전에 제출해야 함

변호사 비용은 용도가 불분명

이상원: 답: 사건에 관여되어 그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새로운 변호사 선임필요

위원장: 친 변호사는 구속을 막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고 사건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는 내용이 아님

송은상: 투쟁지부로 이미 선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지원

위원장: 법률비용 지원의 기준은 나름대로 심의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사건과 비용의 용도에 대해 중집위에서 미리 다뤄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에 대해 혼란이 생긴것 같다

김중규: 중집위에서 결정하면 어떤가

앞으로의 법률비용기준적용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투쟁사업장에서의 투쟁방식도 (홍보실침입 등) 냉철히 고려되어야 한다

김광호: 표준지부의 싸움은 내부의 비리 척결을 위해 시작된 싸움이니만큼 이 싸움도 투쟁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1천만원 지원해야 한다.

수석: 450만원 지원에 대한 것은 투쟁의 과정이라고 보지만 홍보실 침입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이부분에 대해서면 정상적인 노동조합 투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

정승용: 노동조합과의 활동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부 상황이 몇 년동안의 투쟁으로 이어온 만큼 노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연계성이 확보 되었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니 만큼 앞의 투쟁과 연계가 되어 있는 만큼 달리 보지 않아야 한다.

오승원: 노사간의 협상권을 당사자를 제외한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싸움을 휴전하고 결과를 봐야 한다

위원장: 최소한의 실무적인 판단과 집행부에 맡겨져야 할 문제가 중앙위에 안건이 상정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 위원장으로서 내리는 판단은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차기 집행부로 넘겨 달라고 요청한다.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한욱: 찬반투표로 결정하자.

위원장: 표결하자면 따르겠다.

사무처장: 조금더 검토하자

김명호: 지금 지원하느냐 안하느냐의 결정이 아니라 차용을 우선 전제로 추후에 결정하자

송은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표결로 해서 처리하자

■거수투표

1. 오늘 현재 변호사비 지원 찬반 투표결정하자 -16명

2.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후 다시 결정

⇒1번으로 결정

■변호사 비용 지원에 대한 찬반투표(지원금액과 변호사 선임은 집행단위에서 결정)

지원찬성: 15

지원반대: 9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심의안건1] 제6대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건

-안건설명: 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을 유지(직무대행: 최영섭부위원장으로 결정/1월 1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7대 임원을 선출 결의

[기타]6대 집행부 임원의 한마디 (임기를 마치며)

수석: 이년동안 중간에 산자부의 산기평 산기원을 거치며 사퇴생각을 몇 번했지만 임기는 마치고 간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보는 것은 열받는다 노조를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그리고 우리 조직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년동안 느낀 것은 지난 96~97년보다 노조 전임자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내부의 다툼으로 실망하고 노조의 근본을 잃어가는 것이 아쉬웠다.

최영섭부위원장: 시간부족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임기동안 잘하진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크게 다투지 않고 잘 지낸 것에 감사한다.

박명국부위원장: 지부장8년에 사무국장4년 동안 하고싶은 이야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때도 있다 과거노조 이렇게 다가서는 문제가 너무 크다 감정싸움이 아니라 지부장들의 의도대로 서로에게 하려고 활동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처음의 목적은 의해서 기본 좋은 조합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승원부위원장: 1년 이삼 개월 동안의 부위원장활동을 통해 정말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위원장이 되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았다. 지부의 조합원으로 돌아가서 지부장과 부위원장의 경험으로 살아 움직이는 지부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

사무처장: 돌아켜보면 허릿속으로는 움직였지만 몸으로 움직이지 못한 여년이었다고 생각한다. 다 함께한 동지들에게 감사한다.

위원장: 노조의 활동가로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D를 못 넘은 것 같다고 생각 된다. 과거 노조를 만들었던 의미는 퇴색되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은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꾸며 큰 바위 돌을 만들어 가는 게 노동자라고 생각 한다 끝까지 견뎌 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지부장들과 차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동안 함께한 동지들에게 감사 한다.

작성 자 김 영 목 (인)

확 인 자: 이 성 우 (인)

01 03 14 10:10 FROM

수신: 이영환
발신: 김한익

장, 최영섭 사무국장을 반전임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강종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부장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심의안건 3] 우리노조 규약 검토 건

- > 원안을 가결함
- > 오탈자는 사무처와 임원들이 검토하고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

[심의안건 4] 제 규정 개정 건

- > 회의 규정 중 “제 4조(대리 출석) ①을 대리출석자에 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주되 특별한 경우(입원 선거 등)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로 수정하며 차기 중앙위에 문구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 처무 규정은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 사무처 운영규정 중 “제 15조(안식년휴가)”는 원안을 가결하고 이후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시행 방법을 정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심의안건 5] 지부(분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건

- > 과학 문화재단지부(개정), 대덕특구복지센터분회(제정), 항공우주연구원지부(개정)은 원안을 가결함
- > 건설기술연구원지부는 지부장의 회의 불참으로 차기 중앙위원회에 지부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한다.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는 지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 지부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한다.

[심의안건 6] 징계위원회 구성 건

- >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징계위원으로는 송한준(해양연구원), 류태희(통일연구원), 박근철(건기연), 금종오(보건산업진흥원), 김경석(방송영상산업진흥원) 총 5인의 중앙위를 단장일치로 임명한다.

[심의안건 7] 기타

- (1) 이랜드 투쟁 기금 건
 - > 이해선 지부장의 설명
 - > 공공운수연맹 직할협의회 공공서비스 분과에서 우리노조에 배정될 1,000인 선봉대 배정 금액은 향후 임원과 이해선 지부장이 논의해서 배정 금액 남부를 결정한다.
- (2) 2007년 임금 협상 관련 건
 - > 본부에서 각 기관으로 임금 요구(안)을 일괄 보내는 것으로 한다.
 - > 임금 요구(안)은 민주노총 2007년 임금 요구(안)으로 한다.
- (3) 과거부 감사에 대한 대응 건
 - > 본부에서 과거부 감사에 대하여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 (4) 지방이전관련 특별위원회 건
 - > 신문봉 지부장의 설명
 - >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지방이전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한다.